

검 토 의 견 서

- 일 시 : 2021. 2. 26.(금)
- 장 소 :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
- 안 건 : 「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(의안번호 제2119호, 이세열 의원 대표발의)

행 정 국

- 행정국장 김태균입니다.
-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, 채유미·한기영 부위원장님,
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- 이세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19호
「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
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
상위법령인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91조 (지명의 결정)근거규정의 변경에 따른
내용입니다.
-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91조 일부
조항 삭제(해양지명 심의의결→별도 법률제정)와
개정에 맞게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상 근거항을
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-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

2021. 2. 26.

행정국장 김 태 균